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330
----------	-----

제출연월일 : 2008. 4 . 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범의원의 7인이 발의하여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 (2008. 3. 11)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 이유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 12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을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적인 계약 갱신을 규정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음.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당초 조례안 :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③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등) 시장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2.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홍보,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 강구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침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등)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정책 토론 및 평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②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 지원하여야 한다.

③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기준 및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동편의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에 대한 이용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센터의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설치·운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3인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도로·교통·건축·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예산의 확보)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 조치 등) 종전 조례에 의한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위탁 관련 사항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38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4.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②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소재하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0.8.2, 2001.6.29, 2005.8.5>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